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7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건설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건설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,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-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안 제7조 중 “우선” 및 “관급자재로 공급” 문구를 삭제하였으며,
 -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해, 안 제9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“둔다.”를 “둘 수 있다.”로 변경하고,
 -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3. 5. 11.부터 5. 31.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3. 6. 29.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사업자 차별에 해당하는 경쟁제한적 규정의 개선 및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,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02345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7. 7.

제출자 : 달서구청장
(건설과장)

1. 개정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사항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경쟁제한 규제개선 반영(안 제7조)

- “우선” 및 “관급자재로 공급” 문구 삭제

나.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(안 제9조, 제12조 및 제13조)

- 비상설화 관련 조항 추가

3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5. 11.~5. 31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 심사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5) 비용추계서: 비대상

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)” 을 “(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” 을 “건설사업자가” 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둔다” 를 “둘 수 있다” 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위원회 운영)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· 운영하고, 심의 · 의결 후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” 을 “위원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